

# 보충협약서

2022. 5. 26

인천적십자기관노동조합

위원장



인천적십자병원

병원장

박태환



경인권역재활병원

병원장

장용원



## 전 문

대한적십자사 인천적십자병원, 경인권역재활병원과 인천적십자기관노동조합은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제법의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인천적십자병원, 경인권역재활병원의 발전과 조합원의 인권향상 및 복리증진을 구현할 목적으로 본 협약을 상호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대한적십자사 인천적십자병원, 경인권역재활병원(이하 “기관” 이라한다)과 인천적십자기관노동조합 (이하 “조합” 이라 한다)이 자주성을 인정, 존중하고 그 지위향상을 도모하며 상호 민주적 노사관계를 확립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보충협약을 체결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하에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조합간부의 활동시간)** 기관은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준비시간등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실시 할 경우 조합간부 및 조합원에게 조합활동을 보장한다.

### 제3조(기관의 시설이용)

- ① 조합은 기관의 시설 내에 노사 합의하에 조합사무실을 두며 조합사무실을 이전해야 할 경우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 ② 기관은 조합 활동에 필요한 비품, 집기, 통신, 방송, 기타 병원의 시설을 제공하되 사전에 병원과 협의한다.
- ③ 기관은 조합의 회의, 교육, 행사를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과 차량지원을 요청할 시 이를 사전 협의하여 제공한다. [개정 2016. 12. 1]

### 제4조(인사원칙)

- ① 기관은 조합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하지 않는다.
- ② 기관의 조합임원의 인사는 합의 시행하고 간부 및 대의원에 대한 인사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 후 시행한다.
- ③ 경영상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는 인사는 원칙적으로 금한다.

④ 정원 내 비정규직의 결원이 발생 할 경우, 정규직 채용에 최대한 노력한다.

**제5조(휴직 및 기간)** 기관은 조합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휴직을 명해야 한다.

- ① 직원운영규정 제53조(휴직)에 해당되는 자.
- ② 업무상 직업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 ③ 휴직기간은 직원운영규정 제54조를 적용한다.

**제6조(휴직자 취급)** 휴직자에 대하여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조합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 ②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법령의 의무이행을 위한 휴직 및 육아휴직은 근무 연수에 삽입한다.
- ③ 휴직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복직시켜야 한다.

**제7조(부당징계 및 해고)** 조합원에 대한 정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 징계로 판명되었을 시 기관은 즉각 다음 조치를 취한다.

- ① 판정서 또는 결정서를 접수 당일부로 징계 무효처분을 공시한다.
- ② 징계기간 중 임금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법원판결에 임금지급에 대해서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 ③ 병원은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상관없이 병원은 초심 결정에 따르되 노사 합의하에 즉시 징계 해제한다.

[개정 2016. 12. 1]

**제8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① 상시 근무자의 평일 근무시간은 08:30 ~ 17:30, 토요일 근무시간 : 08:30 ~ 12:30 이며 3교대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병 동	아침번: 07:00~15:00	낮 번: 14:30~22:30	밤 번: 22:00~07:30
응급실	아침번: 07:00~15:00	낮 번: 15:00~22:00	밤 번: 22:00~07:00
단, 근무 교대 시간은 각 부서의 사정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 ② 3교대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포함한 8시간으로 한다.
- ③ 1일에 8시간을 정한외의 행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

로시간으로 한다.

- ④ 교대근무자는 16시간 이상의 근무간격을 두어야 한다.
- ⑤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상시근무자의 중식시간 대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⑥ 연장근무시간은 30분단위로 적용한다.

**제9조(휴일)** 기관은 다음 각항을 유급휴일로 한다.

- ① 공휴일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노동절(5월 1일)
- ② 기타 정부 또는 적십자사가 임시로 지정한 날
  - 1. 대한적십자사 창립기념일(10월 27일)

**제10조(유공직원 표창)** 유공직원 기관장 표창 시,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직원을 포함하여 심의한다.

**제11조(근무복지급)** 병원은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을 아래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구분	지급일	하복	동복	비고
간호직	10월	1년1착	1년1착	자켓, 스웨터, 가운 중 택일
의료기사 (약국포함)	10월	1년1착	1년1착	가운, 근무복
사무직	4월, 10월	2년1착	1년1착	
기관실	4월, 10월	1년1착	1년1착	안전화 포함, 하복 상의는 2벌
기사실	4월, 10월	1년1착	1년1착	하복 상의는 2벌
재활치료실	10월	1년2착 가운과 근무복		입사 시 가운 1벌, 근무복2벌

(※근무복 선정 시 조합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선정한다)

(※의무, 간호, 보건직원에게 짝수해에 1착 근무화를 지급한다)<개정 2022.05.26>

**제12조(경조금)** 기관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금을 지급한다.

- ① 본인결혼 200,000원
- ② 자녀결혼 100,000원
- ③ 배우자 사망 400,000원
- ④ 자녀 사망 400,000원
- 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사망 100,000원
- ⑥ 본인의 조부모 사망 50,000원

※ 경조금 범위 내에서 화환지급가능

**제13조(직원 복지후생) :**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신설 2016. 12. 1]

- ① 문화생활 지원비를 1인당 연 100,000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 ② 생일자에게 100,000원에 해당하는 소정의 선물을 선택의 폭을 넓게하여 최소한 분기별로 지급한다.<개정 2022.05.26>
- ③ 출산장려금 첫째아 300,000원, 둘째아 500,000원, 셋째아 1,000,000원을 지급한다.

**제14조(식사제공)** 식비는 1식당 7,000원으로 식수정산(휴가, 교육등 제외)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개정 2022.05.00>

- ① 기관은 식사의 질이 중, 석식, 휴일이 균등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복지시설)**

- ① 기관은 조합원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탈의실과 휴게실을 제공한다.
- ② 직원 취미활동을 위한 동아리 활동비를 동아리 회원 1인당 분기별로 5,000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 ③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 ④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원내 체력단련 기구와 시설 설치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6. 12. 1]

**제16조(원내외교육)**

- ① 기관은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전 과정에 대한 설명, 필요한 기술을 실시하고 안전보건수칙에 대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 ② 기관은 신규채용자에 대한 임금, 근로조건, 조합소개시간을 위하여 입사 후 2주 이내에 신규교육을 실시한다.
- ③ 기관은 직원의 새로운 기술 또는 기계설비 도입, 배치 전환 등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소요비용을 기관에서 부담한다.
- ④ 기관은 직무와 관련된 필수면허 및 자격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재택 보수교육시 수수료등을 제출하면 연 1일 근무로 인정한다.<개정 2022.05.26>

**제17조(건강진단 결과조치)** 건강진단 결과를 즉시 개별 조합원과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기존의 노동을 계속함으로써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경미한 업무로 배치전환하고 근무시간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제18조(병원내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

- ① 병원내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병원은 조합원이 병원내 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한 다음 처치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③ 병원은 타인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부서의 조합원 또는 조합이 건강검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실시한다.
- ④ 병원내 공기오염, 방사선물질의 사용,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등을 위해 규칙을 준수하고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위원회에서 정한다.
- ⑤ 병원은 인프렌자, 간염(A,B) 예방접종을 건강검진 후 실시한다

제19조(기준준수) 기관은 산업안전법에 규정된 보건안전 기준을 준수하여 작업환경과 시설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 제20조(병원내 CCTV 설치)

- ① 병원은 환자와 노동자의 인권침해 및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및 각도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과 합의한다.
- ② 병원은 조합원의 감시 및 통제 수단으로 CCTV를 이용할 수 없으며 조합원 인사, 징계 등의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기건강진단) 기관은 전 직원에게 매년 1회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병원이 부담한다. 건강검진 항목의 변경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한다.<개정 2022.05.26>

### 제22조(보충교섭)

- ① 기관과 조합은 보충교섭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내용을 구비한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섭일시 및 장소
  2. 교섭안건
  3. 교섭인 명단
  4.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교섭회의에는 노·사 쌍방 대표자는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권을 위임받은 자로 대체 할 수 있다. (단, 결정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교섭권한 위임자 원본을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만 한다)

**제23조(신속교섭의무)** 기관과 조합 중 일방이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시 상대방은 제출 받은 일시에 교섭에 응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시변경 요청을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24조(서명날인)** 합의가 성립되면 쌍방의 대표자를 포함한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한다.

**제25조(명칭변경 후 효력)** 이 협약 체결 후 기관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이 협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26조(명시사항외의 사항)** 이 협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노사합의하에 결정한다. (단, 단체협약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27조(재교섭)** 유효기간이라도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었을 시 해당사항에 관한 재교섭을 할 수 있다.

**제28조(쟁의의 일반원칙)** 노동쟁의 및 쟁의협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노동쟁의 조정법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병가의 인정 방법)** 병가의 경우 본원에 개설된 진료과가 있는 경우는 본원의 진료증빙 서류 또는 진단서를,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이 지정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회의참석)**<신설 2022.05.26>

- ① 기관은 각 병원의 노사협의회에 노동조합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 및 간부(경인 권역재활병원, 인천적십자 병원 직원 포함)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② 병원운영위원회에 협의된 노동조합 임원 또는 간부 1명이 참여한다.

**제31조(효력)** 이 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6조에 의한 효력을 갖는다.

**제32조(자동연장과 협약의 효력)**

- ① 본 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 갱신 체결 시까지 협약의 효력은 지속되며,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어느 일방이 단협 해지를 통보할 수 없다.
- ② 본 협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조합은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문서로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조합의 갱신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 ③ 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 6개월까지 단체협약이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자동갱신된 것으로 한다.
- ④ 협약 체결 후 노조의 명칭 변경, 분할, 합병되어도 협약은 유효하다.

**제33조(기존 단체협약의 승계)**

- ① 인천적십자병원, 경인권역재활병원은 기존의 보건의료노조 산별협약과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 단체협약 및 조직형태 변경 전 인천적십자기관지부와 합의 사항을 일괄하여 승계 적용한다.
- ② 인천적십자병원, 경인권역재활병원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향후 진행되는 단체교섭과 노사협회의 합의사항 적용에 있어서도 동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위임 누락사항)** 본 협약서에 위임 누락 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으며 별도협약서의 체결권은 인천적십자기관노동조합 위원장과 병원장이 체결권을 부여하며 본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제35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단체협약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36조(유효기간)**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2.05.26>

원안

2022.05.26

이근의



## 별도 협약서

**제1조(준용)** 본 별도협약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연장근무시간)** 3교대 근무자는 당일 연장근무시간에서 30분에서 45분까지는 30분으로 하며, 45분 초과는 1시간으로 한다. 1시간 초과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연장근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인정한다.

**제3조(토요근무)** 토요 격주근무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

**제4조(진료비 감면)** 기관은 조합원 및 그 가족이 본 병원에서 치료시 다음과 같이 진료비를 할인한다.<2017.11.01 개정>

대상 및 분류	할인율	
	외 래	입 원
인천병원/경인권역재활병원 직원 (제3조1호)	진찰료 50% 일반진료비 50%	없음
인천병원/경인권역재활병원직원의 배우자(제3조2호)	진찰료 50% 일반진료비 50%	진찰료 50% 일반진료비 50%
인천병원/경인권역재활병원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제3조2호)	진찰료 폐지 일반진료비 50%	진찰료 폐지 일반진료비 50%
후원회원, 봉사원 RCY지도교사, 기부자 용역업체 직원 (제3조3호)	없음	본인부담금의 10%
지인 소개 (제3조3호)	없음	없음
단체진료계약에 의한 환자 (제3조4호)	없음	본인부담금의 10% (비급여수술재료대 제외)

※ 진료비 할인내규 제3조2호 및 제3조3호에 해당하는 환자의 1회(입원에서 퇴원 시까지) 감면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하며 초과되는 금액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 진료비 할인내규 제3조4호 후원회원은 월10,000원 이상 납부자로 하며, 기부자는 연간 30만원 이상 기부자에 한함

2022. 5. 26.

인천적십자기관노동조합

위원장



인천적십자병원

병원장

박태환



경인권역재활병원

병원장

장용원

